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안내

2019. 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차 례

I . 전환교육의 개요	1
II . 전환교육기관 지정 · 역할	4
III . 전환교육 실시	5
참고 자료	11

I. 전환교육 개요

1. 교육목적

- 고시 시행(2018.9.12.)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의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환 기회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및 발달재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2. 법적근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다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개정*('17.9.12 공포, '18.9.12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자격 기준(이수 과목 등) 및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전환교육 대상자

○ 고시 이전('18.9.12.) 자격 해당자 중 ① 또는 ②의 요건에 충족한 자

* 고시 이전 자격해당자는 조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전환교육 대상자임

①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이트(www.krivet.re.kr) 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해당 자격증 확인, 자격증 미확인 시 전화교육 자격 대상 아님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이 된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

4. 2019년 교육 대상자

○ '3. 전환교육 대상자' 중 고시 시행 당시(2018. 9. 1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를 우선하여 실시

※ 2020년부터 교육횟수 및 장소를 확대하여 모든 전환교육 대상자 교육실시 예정

◆ 전환교육 신청 전 주의 사항 ◆

- ▶ **교육 신청 전 본인의 전환교육 신청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전환교육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과정에서 **전환 교육 대상자가 아님이 확인될 경우 자격인증이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전환교육 30시간을 수료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신청 가능
- ▷ 자격인증 신청 시, 전환교육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민간자격증, 최종 학위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과 관련하여 경력증명서에 경력 산출 기간이 있어야 하며, 전자바우처 제공인력 현황 제출
(전자바우처 운영 전 근무자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첨부)
- ※ 전자바우처 제공인력 현황은 자신의 근무 기관에 요청해서 확인해야 함(한국보건인력개발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에서는 확인 불가)

- ▷ 전환교육 수료자의 경우 전환교육 수료증과 제출서류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자격인증서 발급

※ 전환교육 신청대상 확인 문의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544-6065, www.broso.or.kr

5. 주요 교육내용

-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사업의 이해
-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공통과정 중 사이버교육 3과목, 집합교육 7과목

II. 전환교육기관 지정 및 역할

1. 전환교육기관의 지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따라 지정됨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할

구분	역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실시 (집합/사이버)

Ⅲ. 전환교육 실시

1. 교육구성 및 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공통교과 10과목(각 3시간, 총 3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I : 사이버교육 3과목(9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II : 집합교육 7과목(21시간)

<보건복지부 고시 제 16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별표 1 공통과목

- | | |
|------------------|------------------|
| •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 • 아동발달 | • 재활행정과 정책 |
|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 • 상담심리학 |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 • 심리학개론 | • 장애인 복지론 |

2. 교육운영 방법

※ 집합교육 입교 전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는 혼합교육의 형태

1) 사이버 교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I

○ 해당과목

- 장애아동의 이해, 상담심리, 심리학개론

○ 교육일정: 6.19.(수)부터 집합교육 시작 전까지 (상시 수강 가능)

○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가입 후 신청

○ 수료증 발급

- 교육 수료 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 됨)

2) **집합 교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Ⅱ**

○ **해당과목**

- 재활행정 및 정책, 장애인복지론, 아동발달,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윤리와 철학(재활사윤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교육일정 및 신청일정: '19년 6월~11월**

권역	기수	일정	교육신청 일정	선발확정	장소
서울	1	6.26.(수)~6.28.(금)	6.10.(월)~6.12.(수)	6.13.(목)	이룸센터
	2	7.29.(월)~7.31.(수)	7.15.(월)~7.17.(수)	7.19.(금)	이룸센터
	3	8.28.(수)~8.30.(금)	8.14.(수)~8.16.(금)	8.19.(월)	이룸센터
	4	9.25.(수)~9.27.(금)	9.11.(수)~9.13.(금)	9.16.(월)	이룸센터
	5	10.30.(수)~11.1.(금)	10.16.(수)~10.18.(금)	10.21.(월)	이룸센터
부산	1	7.4.(목)~7.6.(토)	6.20.(목)~6.22.(토)	6.24.(월)	부산교육센터
	2	8.12.(월)~8.14.(수)	7.29.(월)~7.31.(수)	8.2.(금)	부산교육센터
	3	9.18.(수)~9.20.(금)	9.4.(수)~9.6.(금)	9.9.(월)	부산교육센터
	4	10.30.(수)~11.1.(금)	10.16.(수)~10.18.(금)	10.21.(월)	부산교육센터
	5	11.25.(월)~11.27.(수)	11.11.(월)~11.13.(수)	11.15.(금)	부산교육센터
대구	1	7.31.(수)~8.2.(금)	7.17.(수)~7.19.(금)	7.22.(월)	대구교육센터
	2	8.12.(월)~8.14.(수)	7.31.(수)~8.2.(금)	8.5.(월)	대구교육센터
	3	9.30.(월)~10.2.(수)	9.16.(월)~9.18.(수)	9.20.(금)	대구교육센터
	4	10.30.(수)~11.1.(금)	10.16.(수)~10.18.(금)	10.21.(월)	대구교육센터
	5	11.11.(월)~11.13.(수)	10.28.(월)~10.30.(수)	11.1.(금)	대구교육센터
광주	1	7.24.(수)~7.26.(금)	7.10.(수)~7.12.(금)	7.15.(월)	광주교육센터
	2	8.28.(수)~8.30.(금)	8.14.(수)~8.16.(금)	8.19.(월)	광주교육센터
	3	9.25.(수)~9.27.(금)	9.11.(수)~9.13.(금)	9.16.(월)	광주교육센터
	4	10.30.(수)~11.1.(금)	10.16.(수)~10.18.(금)	10.21.(월)	광주교육센터
	5	11.20.(수)~11.22.(금)	11.6.(수)~11.8.(금)	11.11.(월)	광주교육센터
경인(수원)	1	7.31.(수)~8.2.(금)	7.17.(수)~7.19.(금)	7.22.(월)	경인교육센터
	2	8.21.(수)~8.23.(금)	8.7.(수)~8.9.(금)	8.12.(월)	경인교육센터
	3	9.30.(월)~10.2.(수)	9.16.(월)~9.18.(수)	9.20.(금)	경인교육센터
	4	11.4.(월)~11.6.(수)	10.21.(월)~10.23.(수)	10.25.(금)	경인교육센터
	5	11.27.(수)~11.29.(금)	11.13.(수)~11.15.(금)	11.18.(월)	경인교육센터
대전	1	6.24.(월)~6.26.(수)	6.7.(금)~6.9.(일)	6.10.(월)	대전교육센터
	2	7.31.(수)~8.2.(금)	7.17.(수)~7.19.(금)	7.22.(월)	대전교육센터
	3	8.28.(수)~8.30.(금)	8.14.(수)~8.16.(금)	8.19.(월)	대전교육센터
	4	9.30.(월)~10.2.(수)	9.16.(월)~9.18.(수)	9.20.(금)	대전교육센터
	5	10.21.(월)~10.23.(수)	10.7.(월)~10.9.(수)	10.11.(금)	대전교육센터

- 신청방법: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신청
 - 교육신청 일정: 교육시작 2주 전부터 3일간 신청
 - 신청기간: 1일차 10:00 ~ 3일차 18:00 까지
 - 신청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발방법: 선착순 마감
 - 유의사항: 신청 시 뜨는 신청완료 메시지는 교육 확정 의의가 아니며, 선발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선발확정
 - 선발확정일 14:00에 선발여부 개별 연락 예정
- 교육비: 120,000원
 - 납부방법: 개별 가상계좌 입금 및 현장 카드 결제
- 수료증 발급
 - 교육수료 후 1주일 이내 메일 송부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마이 페이지에서 출력
 - 법정 전환교육이므로 21시간 100% 출석해야 수료증 발급 가능
- 생활안내
 - 중식 제공: 구내식당 및 교육장 인근 식당 활용하여 식권 제공
 - 숙박: 숙박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예약
- 교육장소
 -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서울 영등포구)
 - 부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 (부산 동구)
 - 대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교육센터 (대구 동구)
 - 광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광주 서구)
 - 경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인교육센터 (경기 수원)
 - 대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전교육센터 (대전 중구)

세부 교육안내는 선발 확정 후 개별적으로 메일 발송 예정

○ 시간표(안)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9:00~10:00	-	아동발달	윤리와 철학 (재활사윤리)
10:00~11:00	등록 및 입교		
11:00~12:00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14:00	재활행정 및 정책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14:00~15:00			
15:00~16:00			
16:00~17:00	장애인복지론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수료
17:00~18:00			-
18:00~19:00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교과목 세부내용(안)

번호	교과목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1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이해 	자료	-
2	장애인복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개념 및 정의 장애인복지실천의 접근방법 	강의	3
3	재활행정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 관련 법령의 이해 재활조직의 행정, 정책, 기획, 예산 이해 	강의	3
4	아동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발달의 특성과 제반 이론 이해 아동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 	강의	3
5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의 이해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 	강의	3
6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의 이해 가족 진단 및 지원 	강의	3
7	윤리와 철학 (재활사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 윤리와 철학의 이해 재활 실천 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대처 실천능력 습득 	강의	3
8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구급·안전을 위한 응급처치의 개요 응급처치 실습 	강의/ 실습	3

3. 전환교육 수료 후 자격인증 신청

- **자격인증:** 전환교육 이수 후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단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신청
- **신청 절차**

단계	신청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자격관리사업단	내용	처리기간
신청 및 접수	이메일 신청 및 서류제출	접수 및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2주
심사진행	-	검정/판정	• 자격기준 확인 및 심사(인정/불인정) -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4주
결과안내 및 인정서 발급	자격확인서 수령	제작/발송	• 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인증서 제작 • 신청 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됨	10일 이내

○ 신청방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신청자의 서류접수 확인 즉시 이메일로 회신

-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신청서, 민간자격증 사본, 전환교육 수료증(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전환교육 I,II), 최종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경력 시간 산출근거 기재)

○ 제출처

- 신청서 제출: broso@broso.or.kr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표 메일
- 원본 제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연락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우) 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7층 704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단

전환자격 신청, 기간, 방법 등 발달재활 자격인증에 관한 문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544-6065, www.broso.or.kr

※ 해당 교육안내문은 관련 법령, 제도 및 교육기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고
※ 교육담당부서 : 사회서비스교육부 (043-710-9250, 9079)

붙임 1 고시 주요 내용

□ 제정 이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다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개정*(’17.9.12 공포, ’18.9.12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자격 기준(이수 과목 등) 및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 < 시행규칙 개정내용 >

개정 前	개정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민간자격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 문제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발달재활 관련 영역별 질적 강화 필요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규정(안 제4조)

- 언어재활사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자

○ 이수 과목(안 제5조, 별표 1,2)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 및 각 영역별 전공과목을 구체화

○ 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안 제7조)

-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한 전환 교육과정 이수

○ 전환 교육과정* 개설(안 제8조)

- 별표 3의 공통과목을 30시간 이수

○ 자격 인정 절차(안 제9조)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제공인력의 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고시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인력은 3년 이내 자격 조건(제4조, 8조)을 갖추면 자격 인정